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박민규 • 주철현

조계원 · 정동영 · 박홍배

이원택・박희승・허 영

김우영 · 김태선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, 청년도약계좌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1조의20).
- 나. 청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1조의22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1조의20(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제91조의20(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 ①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 른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청년 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"이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-----2030년-----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생 략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91조의22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제91조의22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비과세) ① -----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 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 좌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도약 계좌"라 한다)에 2025년 12월 -----2030년----

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 자소득등"이라 한다)의 합계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1 . 9 (처해고 가으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